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2025. 9. 16.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 안건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발의자: 도하석 의원 등 10명(박왕규, 김기열, 김장관, 이선주, 강한곤, 고명욱, 서보영, 박정환, 김정희)
- 발의일자: 2025. 9. 3.(수)
- 회부일자: 2025. 9. 3.(수)
- 상정 및 의결: 제31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2025. 9. 16.)

2. 제안이유

- 2025년 1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회에 권고한 개정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전부개정하여,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 운영과 구민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심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출장계획서 게시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안 제5조 및 제6조)
- 출장계획서의 제출 수립 및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심사기준,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제9조)
- 공무국외출장 제한 및 예산 편성·집행(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
- 징계현황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52조, 98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5. 전문위원 검토의견(전문위원 이용재)

- 이 전부개정규칙안은 공식행사 초청, 국제회의 참석, 자매결연체결 등 공무로 국외출장을 가는 경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내실있는 공무국외출장 운영과 지방의회에 대한 구민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 2025년 1월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개정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 내용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라 한다)에 참여하는 지방의원을 2명 이하로 제한하고, 전문가와 시민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심사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전까지 의회누리집에 게시하며 10일 이상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심사위원회 의결 후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다시 주민의 견을 수렴하여 심사위원회 의결을 받도록 하였으며
-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후 60일 이내 출장보고서를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심의결과가 기재된 출장보고서를 지체없이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 출장경비는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하도록 하고,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의장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며, 징계를 받는 경우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
- 이 전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52조에 따라 지방의회 내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회규칙으로 하고, 공무국외출장의 내실 있는 운영과 주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권고안을 이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6.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